

#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## 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의안번호 : 2102
- 제 출 자 : 김태수 의원(찬성의원 10명)
- 제 출 일 : 2017년 9월 27일
- 회 부 일 : 2017년 10월 12일

## 2. 제안이유

- 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,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,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(안 제13조).
- 나. “안전행정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, “미래창조과학부장관”을 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”으로 변경함(안 제35조).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가정보화기본법」, 「정부조직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- 다. 입법예고 (2017. 10. 17. ~ 10. 24) 결과 : 의견 없음.

## 5. 검토 의견

### 가.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(안 제7조 제4항 및 제35조)

- 안 제7조제4항은 ‘시의원’을 ‘서울특별시의회 의원’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.
- 안 제35조는 “안전행정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“미래창조과학부장관”을 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”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,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위법령(「정부조직법」) 개정 사항(2017.7.20)을 반영하려는 것임.
- 다만, 서울시는 상위법령 제·개정,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조례 및 규칙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의 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나, 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바, 지연된 입법조치에 따른 정책 혼선 및 시민들의 행정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관련부서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속히 조례가 정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.

※ 서울시는 2017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‘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’사항 등 총 99건(조례 68건, 규칙 31건)의 자치법규를 일괄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, 본 조례 개정안의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」이 제출(2018. 2. 6)되어 있음.

### 나. 위원회 수당 근거의 정비(조례안 제13조)

- 안 제13조는 위원회에 출석 또는 전자심의회에 참여한 위원과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를 서울시 관련 조례(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)에 따라 지급하려는 것으로,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 근거와 기준에 대하여 명확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※ 현재 위원회의 출석 및 삼시 등의 수당 근거 :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 시행규칙(17.7.27제정)에 의거 지급하고 있음.

○ 다만, 현행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”에서 위원회 위원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“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”로 개정함에 따라 안 제13조 후단 조문이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 명확한 조문 구성과 해석의 혼란 방지를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※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.

※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 제4조(수당) ①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,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전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심사수당을,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미리 안전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의 심사수당
2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하 “시의원”이라 한다)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

②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, 지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현 행	개정안	수정의견
제13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 또는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13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 또는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13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 또는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또한, 정보기획관의 정보화전략위원회 회의 관련 예산(회의수당 등)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바, 회의의 활성화와 위원회의 역할제고에 세심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.

□ 최근 4년간 위원회 예산 집행실적

구 분	예산	결산	집행율	집행내역
2017년 ※ 2018.2월 현재	7,392	4,785	64.7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회의수당(11명) : 2,920천원</li> <li>※ 수당집행 상세내역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차 정기회의(12.20) : 1,050천원 = 15명 × 7만원 ※ 시의원1명 제외</li> <li>- 1차 정기회의(3.29) : 1,870천원 = 11명 × 17만원 ※ 시의원1명 제외</li> </ul> </li> <li>○ 회의부대비용 : 1,865천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다과, 회의자료 등 (1,865천원)</li> </ul> </li> </ul>
2016년	8,320	5,166	62.1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회의수당(14명) : 3,440천원</li> <li>※ 수당집행 상세내역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차 정기회의(12.21) : 2,040천원 = 12명 × 17만원</li> <li>- 1차 정기회의(3.27, 서면) : 1,400천원 = 14명 × 10만원(심사수당)</li> </ul> </li> <li>○ 회의부대비용 : 1,726천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다과, 회의물품 등</li> </ul> </li> </ul>
2015년	7,100	6,579	92.7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회의수당(32명) : 5,340천원</li> <li>※ 수당집행 상세내역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차 정기회의(12.29) : 2,040천원 = 12명 × 17만원 ※ 시의원2명 제외</li> <li>- 1차 정기회의(3.27) : 2,550천원 = 15명 × 17만원 ※ 시의원2명 제외</li> <li>- 분과회의 : 750천원 = 5명 × 15만원</li> </ul> </li> <li>○ 회의부대비용 : 1,239천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다과, 회의물품 등</li> </ul> </li> </ul>
2014년	7,250	6,989	96.4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회의수당(26명) : 4,050천원</li> <li>※ 수당집행 상세내역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차 정기회의 : 2,700천원 = 18명 × 15만원 ※ 시의원1명 제외</li> <li>- 1차 정기회의 : 1,350천원 = 8명 × 15만원</li> </ul> </li> <li>○ 회의부대비용 : 2,939천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위촉장 제작, 다과 등</li> </ul> </li> </ul>

□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현황

(단위 : 천원)

○ 2017년 : 2회

연번	개최일자	회의안건	주요내용	참석인원(명)	비고
계	2회			32	
1	'17.12.20 ※전자회의	2017 정보화전략위원회 2차 정기회의	서울디지털기본계획 2020 신규과제 심의	18 (수당:15명)	수당지급은 민간위원에 한함
1	'17.3.29	2017 정보화전략위원회 1차 정기회의	'17년도 정보화시행계획 심의 '17년도 웹접근성수준향상시행계획 심의 서울 디지털 서밋 2017 추진방향 자문	14 (수당:11명)	

○ 2016년 : 2회

연번	개최일자	회의안건	주요내용	참석인원(명)	비고
계	2회			30	
1	'16.5.13	2016 정보화전략위원회 1차 정기회의	2016년 서울시 정보화시행계획 2016년 서울시 웹접근성 수준향상 시행계획 검토	15 (수당:14명)	수당지급은 민간위원에 한함
2	'16.12.21	정보화전략위원회 위촉식 및 2016년 2차 정기회의	신규위원 위촉식 서울디지털기본계획 2020 추진현황 심의	15 (수당:12명)	

○ 2015년 : 3회

연번	개최일자	회의안건	주요내용	참석인원(명)	비고
계	3회			42	
1	'15.2.12	2015 정보화전략위원회 스마트분과회의	서울디지털마스터플랜 선행연구	5 (수당:5명)	수당지급은 민간위원에 한함
2	'15.3.24	2015 정보화전략위원회 1차 정기회의	2015년 서울시 정보화시행계획 서울 디지털기본계획 2020 수립 계획 빅데이터 추진현황	20 (수당:15명)	
3	'15.12.29	2015 정보화전략위원회 2차 정기회의	서울디지털기본계획 2020 수립현황	17 (수당:12명)	

전문위원	김태한	입법조사관	김정덕
------	-----	-------	-----